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403

발의연월일: 2023. 5. 31.

발 의 자:김병주·송갑석·정성호

한기호 • 양기대 • 윤후덕

안규백ㆍ허 영ㆍ기동민

성일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방위산업은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왔음.

방위사업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공사, 용역,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 등의 계약과는 달리 대규모·장기·고가의 계약인 경우가 많고,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 은 특징이 있음.

이에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방

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장병의 생명·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·성능 위주로 낙찰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, 계약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6조제3항).
- 나. 미국 글로벌 공급망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한 · 미 상호국방조 달협정 체결을 위하여 한국산 원자재, 소재, 부품,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6조제6항).
- 다. 입찰참가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46조의2 신설).
- 라. 핵심기술, 미래도전기술,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6조의3 신설).
- 마. 이행 지체의 원인이 계약상대자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등 지체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(안 제46조의4 신설).
- 바. 도전적 첨단무기체계 R&D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

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).

사. 계약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함(안 제59조).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3. "전력화지원요소"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요소를 말한다.
 - 가.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전투발전지원요소
 - 1) 부대시설,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
 - 2) 군사교리(軍事教理),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·장비, 교육훈련 및 주파수
 - 나.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 등의 통합체계지원요 소(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)
- 14. "방위사업계약"이란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다.
 - 가.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

발

- 나.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(부대시설, 군사교리,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·장비,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)
- 다. 방위산업물자(이하 "방산물자"라 한다)
- 라. 심각한 안보 위협,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 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
- 마.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
- 15. "장기계약"이란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방위사업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.
- 16. "방위사업계약상대자"란 국가와 제14호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.

제6조제1항제6호 중 "방위사업계약"을 각각 "국방조달계약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

제6조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2호) 중 "특정정보"를 "정보"로, "사항"을 "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
- 3.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·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
- 5.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 금지에 관한 사항
- 6.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
- 7. 「방위산업기술보호법」 및 「군사기밀보호법」에 따른 의무 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

제6조제3항 중 "국방부장관"을 "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"으로, "방위사업추진위원회"를 "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·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·해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금품·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,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, 계약이행 중단으로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찰·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·해지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할 수 있다.

법률 제19405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2항제12호 중 "제34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(이하 "방산물자"라 한다)"를 "방산물자"로 한다.

법률 제19405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6조(방위사업계약의 특례 등) ① 정부는 단기계약·장기계약·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6조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, 방위사업계약의 종류·내용·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- 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, 계약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.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, 소재, 부품,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.

- 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·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·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·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있다.
-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있다.

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6조의2(착수금 및 중도금) ①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수 있다.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 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 할 수 있다.
 -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59조 제1항 및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

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,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기준·방법·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6조의3(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)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 법」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, 미래도전국방 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 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6조의4(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)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위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방위사업계 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.
 -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있다.

- 1.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
- 2.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4호가목의 계약으로서 방위 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. 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 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
 - 가.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협력업체에 함께 있는 경우
 - 나. 지체의 원인이 협력업체에만 있는 경우
 - 다.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6조의5(계약의 변경)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방위사 업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기 간,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.
 - 1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관계 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
 - 2.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4호가목의 계약으로서 방위 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

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3.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0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5. 방위사업계약상대자, 하도급계약 수급업체 및 재하도급계약 수급 업체의 대표,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
- 6.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·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·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59조(입찰참가자격 제한 등) ①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.
 - 1. 의사결정·입찰·낙찰 및 계약의 체결·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
 - 2. 경쟁입찰,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,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 한 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·청탁 사실이 있는 경우

- 4.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 물 등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
- 5.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원도급 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
- 6. 「방위산업기술보호법」, 「군사기밀보호법」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·침해 사고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입찰자 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2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통보한다.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.

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60조제1항 중 "위촉된 자는"을 "위촉된 자,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입찰·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·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은"으로 한다.

제62조제4항제2호 중 "제46조제2항"을 "제46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체상금의 부과 또는 감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계약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	ال حا ما
현 행 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3. "전력화지원요소"란 무기체
	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
	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
	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확
	보되어야 하는 다음 각 목의
	요소를 말한다.
	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
	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
	다음의 전투발전지원요소
	1) 부대시설, 무기체계의
	<u>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</u>
	어 및 소프트웨어 등
	2) 군사교리(軍事敎理), 부
	대편성을 위한 조직·장비,
	교육훈련 및 주파수
	나.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
	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
	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
	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

<신 설>

등의 통합체계지원요소(무 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 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 다)

- 14. "방위사업계약"이란 다음각 목과 관련하여 체결하는계약을 말한다.
 - <u>가.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</u> 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
 - 나.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 요소(부대시설, 군사교리,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·장 비,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)
 - 다. 방위산업물자(이하 "방산 물자"라 한다)
 - 라. 심각한 안보 위협,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물품
- 마.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

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

 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

 15. "장기계약"이란 계약기간이

<신 설>

<신 설>

제6조(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 제6 도)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 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의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제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각 교실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각 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6.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6. 획득에 관한 계약(이하 "<u>방</u> 위사업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는 방산업체, 일반업체,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

	<u>2</u> ই	계	연!	Ē	۰) -	상으	4	7]	간여	케	<u>걸</u>
	<u>치</u>	는	방.	위스	} 알	계	약	<u>o</u>	로/	너	대
	<u>통</u>	렁 =	성으	.로		정호	하는	=	겨]약	을
	말:	한디	<u> </u>								
<u>16</u>). "	방	위ㅅ	·업	계	약기	상대	引ス	}"i	란	국
	<u>가</u> :	와	제	143	호 으	1	계	약~	을	체	<u>결</u>
	하-	는	자·	연 인] [또는	=	법	인-	을	말
	한1	다.									
62	조(기	청립	널서	약?	제	및	T	<u>옥</u> 투	ース	: 만	제
도	.) (1	_								
			(द्								
					·						
	국	방길	조딜	[계	약-						

체,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 연구기관과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(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 정한다)을 체결하는 수급업 체(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 급업체)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(매매계약 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 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에 한정한다)을 체결하는 수 급업체(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)의 대표와 임원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 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국방조달계
<u> </u>
—
국방조달계약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위원회의 위원
②
1. (현행과 같음)
2.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
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
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

- <u>2.</u> 방위사업과 관련된 <u>특정정보</u> <u>4. ------<u>정보</u>----</u> 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 항
- 3. 그 밖에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<u><신</u>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4항의 |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 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하다.

<신 설>

저해하는	일체의	불공정	형행위
금지 등에	관한 /	<u> 사항</u>	

- ----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3.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 는 알선ㆍ청탁의 금지에 관 한 사항
- 5.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 금지에 관한 사항
- 6.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
- 7. 「방위산업기술보호법」 및 「군사기밀보호법」에 따른 의무 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
- 청장-----
- -----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--

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 청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

④ ~ ⑨ (생 략)

개정법률

- 제9조(방위사업추진위원회) ① | 제9조(방위사업추진위원회) ① (생 략)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 · 조정한다.
 - 1. ~ 11의2. (생 략)
 - 12. <u>제34조에 따른 방위산업물</u> 12. <u>방산물자-----</u> 자(이하 "방산물자"라 한다)

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 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 당 입찰・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· 해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 행위의 경중,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,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입찰・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 · 해지 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 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.

⑤ ~ ⑩ (현행 제4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)

법률 제19405호 방위사업법 일부 법률 제19405호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

(현행과 같음)

- 1. ~ 11의2. (현행과 같음)

의 지정에 관한 사항

13. • 14. (생략)

③ ~ ⑤ (생 략)

법률 제19405호 방위사업법 일부 법률 제19405호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

제46조(계약의 특례 등) ① 정부 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 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, 정 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을 조달하거나 「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」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 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 · 장기계약 · 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. 이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·내용<u>·방법,</u>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 13. • 14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개정법률

| 제46조(방위사업계약의 특례 등)

- ① 정부는 단기계약·장기계약 ·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 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6 조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 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하고,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 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 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| 에 따른다.
- 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 한 경쟁입찰에서는 방위사업계 약의 특수성, 계약의 성질과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 정할 수 있다.

- 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당해 계약 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에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 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· 지급방법 및 지급절 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중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.
-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· 직할기관과 각군 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 를 구매・공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

- 안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 ④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 - ⑤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 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 에 기초하여 정한다. 개산계약 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 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 재, 소재, 부품,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.
 - 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· 직할기관과 각군 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 를 구매・공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 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 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 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・성능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 있다.

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신 설>

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 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> 제46조의2(착수금 및 중도금) ①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 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 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 우 지급된 금액은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되 어서는 아니 된다.

- ②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기계 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되는 착 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 약 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.
-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

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59조제1항 및 「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 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 우에도,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방위사업계 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 만,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 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
 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기준・
 방법・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
 정한다.

제46조의3(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)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계약상대자가 「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」 제2조제5호나목

<신 설>

<신 설>

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 술,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제46조의4(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)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 위사업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 이 방위사업계약의 이행을 지 체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.
 -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감면할 수 있다.
 - 1.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
 - 2.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4호가목의 계약으로

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- 3. 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 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않은 경우
 - 가.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협력업체에 함께 있는 경우
 - 나. 지체의 원인이 협력업체 에만 있는 경우
 - <u>다.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</u> <u>험조건인 경우</u>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의5(계약의 변경) 계약당사 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 초의 방위사업계약은 원칙적으 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

<신 설>

제50조(비밀의 엄수) 다음 각 호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기간,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 다.

- 1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관계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
- 2.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4호가목의 계약으로 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0조(비밀의	엄수)	
		•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제59조(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 재)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 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 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・일반업체,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,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에 대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할수 있다.

- 5. 방위사업계약상대자, 하도급 계약 수급업체 및 재하도급 계약 수급업체의 대표, 임직 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
- 제59조(입찰참가자격 제한 등) ①
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
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
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
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
 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
 을 제한하여야 한다.
 - 1. 의사결정·입찰·낙찰 및 계 약의 체결·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· 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
 - 2. 경쟁입찰, 계약체결 또는 이 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 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 여 미리 입찰가격, 수주물량

-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 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3.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·청탁 사실이 있는경우
- 4.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
- 5.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 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
- 6. 「방위산업기술보호법」,
 「군사기밀보호법」에 따라
 방위산업기술 유출·침해 사
 고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
 실이 있는 경우
-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

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 약을 체결할 수 없다. 다만, 제 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입찰 자 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
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 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 다만, 입찰참가자 격 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2년으로 통보한다.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종료 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 격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 종료 일부터 7년으로 한다.

제60조(공무원 의제 등) ① 위원 지회,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, 제6조제9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「형법」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

② (생 략) 제62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(생략)
- 2. <u>제46조제2항</u>의 규정에 의하 2. <u>제46조의2제1항</u>-

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
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
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내
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제60조(공무원 의제 등) ①
위촉된 자, 국방조달계약
과 관련된 입찰・낙찰 또는 계
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
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
위원은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62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
같음)
4
1. (현행과 같음)

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 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

3. • 4. (생략)

⑤・⑥ (생 략)
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
⑤ • ⑥ (현행과 같음)